21. 스페인(Spain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○ 최초법 : 1919년
○ 현행법 : 2015년(사회보장)

2. 제도형태

○ 사회보험제도 및 사회부조제도

3. 적용대상

○ 사회보험제도
• 당연적용 : 11개의 직업군에 따른 산업, 상업 및 서비스 분야의 근로자. 특정 상황의 농업근로자 및 가사근로자
• 임의가입 : 근로자로서 가입이 상실된 경우 가능
• 특별제도 : 공공부문근로자, 군인, 자영자, 선원, 채탄부(coal miner)

○ 사회부조제도 : 빈곤 노인 및 장애인

4. 재원조달

○ 가입자
• 사회보험 : 총 소득의 4.7%
- 가입자의 보험료로 질병, 출산 및 산재 급여를 위한 재원도 충당
- 보험료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 : 월 €858.60, 일 €28.62
- 보험료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 : 월 €3,751.20, 일 €125.04
• 사회부조 : 없음

○ 자영자
• 사회보험 : 비해당
•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• 사회보험 : 총 소득의 23.6%
- 사용자의 보험료로 질병, 출산 및 산재 급여를 위한 재원도 충당
- 보험료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 : 월 €858.60, 일 €28.62
- 보험료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 : 월 €3,751.20, 일 €125.04

•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 부 : 연간 보조금
• 사회보험 : 연간 보조금
• 사회부조 : 총 비용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• 노령연금(사회보험)
- 최종 15년 중 2년을 포함하여 총 보험료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인 65세 6개월 도달자(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67세로 상향)
- 완전연금은 납부기간이 35년 6개월이어야 함(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37년으로 상향)
- 퇴직하는 근로자를 실업자로 등록된 자로 대체하는 경우 64세 수급 가능
- 고난도, 고위험 또는 유해직종 종사자의 경우 수급개시연령이 낮아짐
- 65% 이상(장애가 수명 단축을 야기하는 경우 45% 이상) 장애로 판정된 경우 수급개시연령이 낮아짐
- 장애발생 이전 납부한 가입자의 전체 보험료 납부기간의 0.25%(상시간병을 요하는 경우 0.5%)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정상 퇴직연령이 감소되며, 동일한 기간은 연금계산을 위한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간주
- 비자발적 조기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이 33년 이상인 61세 6개월 도달자로 비자발적인 실업상태(경제상황, 사망, 퇴직 또는 사용자의 장애로 인하여 사업재건 또는 사업중단)에 있는 자로서 연금청구 전 최소 6개월 이상 구직자로 등록된 경우
- 자발적 조기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이 35년 이상인 63세 6개월 도달자에게 지급
- 부분연금 : 3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61세 10개월 도달자로 근로시간이 정규 근로시간의 25~50%로 감소된 자(정규직 근로자가 대체자로 고용된 경우는 75%), 최소 6년 이상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되어있어야 함
- 연기연금 : 최근 15년 중 2년을 포함하여 총 보험료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장 가능
- 소득조사 : 최저연금 수급자의 최대 연간소득(연금제외)은 €7,133.97(부양배우자가 있을 경우 €8,321.85) 초과할 수 없음
- 최저 연금월액은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는 €639.30; 부양배우자가 없는 경우 €606.70; 부양배우자가 있는 경우 €788.90
-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

• 비기여형 노령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- 16세 이후 스페인에서 최소 10년이상 거주한 65세 도달자에게 지급

○ 장애연금
• 장애연금(사회보험)
- 완전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상시 간병이 요구되는 중증 장애가 있어야 함
- 31세 미만자 : 16세 이후부터 장애 발생일까지의 기간 중 33% 이상 보험료 납부
- 31세 이상자 : 20세 이후부터 장애 발생일까지의 기간 중 25%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, 총 5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중 20%는 최근 10년 안에 납부한 것이어야 함
- 가입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어야 함
- 국가사회보장청 감독 하에 장애심사전문팀(Multiprofessional Team for Disability Assessment)이 장애 심사 및 재심사
- 상시간병수당 : 가입자가 중증장애로 판정받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상시 간병이 요구되는 경우 지급
- 부분장애
  · 일반 직업상 최소 33% 이상 영구근로능력 상실로 판정되어야 함
  · 장애발생 직전 10년내에 1,800일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어야 함
- 소득조사 : 최저연금 수급자의 최대 연간소득(연금제외)은 €7,133.97(부양배우자가 있을 경우 €8,321.85) 초과할 수 없음
- 최저 연금월액은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는 €639.30; 부양배우자가 없는 경우 €606.70; 부양배우자가 있는 경우 €788.90
-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
• 비기여형 장애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- 65%이상 영구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스페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18세~65세인 자

○ 유족연금(사회보험)
• 배우자 연금
- 사망한 가입자가 최종 5년간 보험료 납부일수가 500일 이상이며 일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, 사망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이었거나 또는 사망당시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
- 재혼시 연금 중단됨. 미망인(홀아비) 또는 동거인은 특정 상황(소득, 연령, 장애)에 있는 경우 부분 또는 완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음
- 사고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전 납부기간이 요구되지 않음
- 유족 대상

· 사망자와 1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배우자(특정 상황에 있는 별거 또는 이혼한 배우자 포함), 또는 사망자와 총 2년 이상 동거하거나 사망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

• 고아연금
  - 21세 미만의 자녀(실업상태이거나 소득이 최저임금의 100% 이하인 경우 혹은 학생 25세, 장애인의 경우 제한 없음)
    · 순위에 따라, 손자녀, 18세 미만(장애인의 경우 제한 없음)의 형제자매, 부모, 조부모, 45세 초과한 형제자매
  - 월 최저 임금은 €735.90
• 기타 수급권자의 유족연금
  - 18세 미만인 손자녀, 형제·자매, 45세 이상인 부모, 조부모, 형제·자매에게 지급
  - 모든 유족은 사망자와 함께 생활하였고 경제적 피부양자였으며 소득조사를 만족하여야만 함
  - 소득조사 : 최저연금 수급자의 최대 연간소득(연금제외)은 €7,133.97(부양 배우자가 있을 경우 €8,321.85) 초과할 수 없음
• 장제비 :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지급
• 상호협정이 있는 경우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•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보험료를 납부한 최초 15년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평균 소득의 50%를 지급. 163개월까지의 보험료 납부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개월당 0.21%씩 가산하고, 보험료 납부기간이 164~246개월인 경우 추가 개월당 0.19%씩 가산하여 지급
  - 평균 소득은 최근 21년(252개월; 매년 1년씩 상승되어 2022년에 25년으로 상승)간 가입자의 총소득을 294(2022년까지 350에 달함)로 나눔
  - 자녀가 2명인 여성은 노령연금의 추가 5% 가산됨; 3명인 경우 10%; 4명 이상인 경우 15%
  - 최저연금월액 :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에게 €639.30 지급; 피부양 배우자 없는 경우 €606.70; 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€788.90
  - 최대연금월액 : €2,580.13 (연 €36,121.82)
  - 소득조사 : 최저연금 수급자의 최대 연간소득(연금제외)은 €6,993.14(피부양 배우자가 있을 경우 €8,157.57)을 초과할 수 없음
  - 지급횟수 : 연간 14회
  - 비자발적 조기연금 : 정년퇴직 전 연금을 청구 시 보험료 납부 연수에 따라

매년 감액됨

· 보험료 납부기간이 38.5년 미만인 경우 조기수급 1년당 7.5%씩 감액
· 보험료 납부기간이 38.5~41.5년인 경우 조기수급 1년당 7%씩 감액
· 보험료 납부기간이 41.5~44.5년인 경우 조기수급 1년당 6.5%씩 감액
· 보험료 납부기간이 44.5년 이상인 경우 조기수급 1년당 6%씩 감액

- 자발적 조기연금 : 정년퇴직 전 연금을 청구 시 보험료 납부 연수에 따라 매년 감액됨
  · 보험료 납부기간이 38.5년 미만인 경우 조기수급 1년당 8%씩 감액
  · 보험료 납부기간이 38.5~41.5년인 경우 조기수급 1년당 7.5%씩 감액
  · 보험료 납부기간이 41.5~44.5년인 경우 조기수급 1년당 7%씩 감액
  · 보험료 납부기간이 44.5년 이상인 경우 조기수급 1년당 6.5%씩 감액
  · 자발적 조기연금 최저액 :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에게 €565.30 지급; 피부양 배우자 없는 경우 €565.30; 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€7739.50
- 부분연금 : 감액연금 지급, 최저부분연금은 정년퇴직연령 최저연금액에 기준으로 근로시간 감소비율에 따라 계산
- 연기연금
  · 정년퇴직 이후 1년 연기할때마다 증액
  · 보험료 납부기간이 15~24년인 경우 2%, 25~36년인 경우 2.75%, 37년 이상인 경우 4% 증액됨
  · 최대 월 연기연금액은 €2,580.13(연 €36,121.82)
  · 최대 월 연기연금액은 최대연간소득을 초과할 수 없음
- 수급자가 단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비례적으로 감액된
- 연금액 조정 : 소득 및 사회보장비용을 포함한 재평가 지수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됨. 연 최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의 0.25% 증가; 연 최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의 0.5% 증가됨

• 비기여형 노령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개인소득 및 가족구성원에 따라 월 €92.48~369.90까지 지급됨

○ 장애연금

•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일반직종에서 완전근로능력상실시, 가입자의 월 기준소득금액의 55% 지급;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거나 또는 개인적, 전문적 상황으로 인해 일반직종에서 다시 고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75%까지 증가할 수 있음; 어떤 직종에서도 절대근로능력 상실시 가입자 기준소득의 100% 지급됨
  - 월 기준소득
    · 근로와 관련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일 경우 월 기준소득은 지난달의 가입자 일일 평균소득(작년에 받은 추가근로평균수당 및 그 외

수당 포함)에 365를 곱하여 12로 나눈 금액임.

· 근로와 무관한 부상으로 인한 장애일 경우 가입자의 지난 7년 중 연속된 24개월(조건 없음)의 소득을 28로 나눈 금액이고, 일반질병으로 인한 장애 또는 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난 96개월간의 가입자의 월 소득을 112로 나눈 금액임

- 급여산정을 위한 최저 월 소득 : €858.60
- 급여산정을 위한 최고 월 소득 : €3,262.40
- 상시간병 보조금 : 장애발생 전 가입자의 월기준소득의 45%와 가입자의 지난 기준소득의 30% 합하여 지급, 지급된 최저 증가는 장애연금의 45% 이상임
- 최저연금월액(상시간병보조금 포함) : €959(피부양 배우자가 있을 경우 €1,183.40, 피부양 배우자가 없는 경우 €910.100)
- 최저연금월액(일반직종 근로능력 상실시) : 60~65세 €598(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€739.50, 피부양 배우자가 없는 경우 €565.30)
- 최저연금월액(모든직종 근로능력 상실시) : 65세 이상 €639.30(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€788.90, 피부양 배우자가 없는 경우 €606.70)
- 자녀가 2명인 여성은 장애연금의 5% 가산하여 지급됨; 3명인 경우 10%; 4명 이상인 경우 15%
- 지급횟수 : 연간 14회
- 연금액 조정 : 소득 및 사회보장비용을 포함한 재평가 지수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됨. 연 최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의 0.25% 증가; 연 최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의 0.5% 증가됨

• 부분영구 장애연금(사회보험)
- 장애 발생 전 달 가입자 일일 평균소득의 24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
- 급여계산을 위한 최저 월 소득 : €858.60
- 급여계산을 위한 최고 월 소득 : €3,751.20
- 지급횟수 : 연간 14회
- 연금액 조정 : 소득 및 사회보장비용을 포함한 재평가 지수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됨. 연 최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의 0.25% 증가; 연 최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의 0.5% 증가됨

• 비기여형 장애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개인소득 및 가족구성원, 상시간병 필요에 따라 월 €92.48~554.85까지 지급됨

○ 유족연금(사회보험)

• 배우자연금

-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또는 수급권이 있는 노령, 장애연금 산정을 위한 사망자의 월 기준소득의 52%를 지급함; 피부양 자녀가 있고 유족 배우자의 평가 소득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 70%를 지급함
- 사망자가 사망시점에 근로하고 있었다면 월 기준소득은 사망 전 최종 15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24개월의 소득을 28로 나눈 금액임
- 급여계산을 위한 최저 월 소득 : €858.60
- 급여계산을 위한 최고 월 소득 : €3,751.20
- 최저연금월액 : 60세 미만은 €484.20, 60~64세인 경우 €639.30, 65세 이상 또는 65%이상의 장애로 평가된 경우 €639.30,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€739.50
- 자녀가 2명인 여성은 장애연금의 5% 가산하여 지급됨; 3명인 경우 10%; 4명 이상인 경우 15%
- 지급횟수 : 연간 14회
- 소득조사 : 최저연금 수급자의 최고 연간소득(연금제외)은 €6,923.90를 초과할 수 없음
- 유족인 배우자가 사망자와 이혼하였거나 법적으로 별거하였을 경우, 유족이 사망자와 동거한 기간에 비례하여 감액지급
- 지급횟수 : 연간 14회

• 고아연금

-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또는 수급권이 있는 노령, 장애연금 산정을 위한 사망자의 월 기준소득의 20%를 지급
- 월 기준소득은 사망 전 15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24개월의 소득을 28로 나눈 금액
- 급여계산을 위한 최저 월 소득 : €825.60
- 급여계산을 위한 최고 월 소득 : €3,751.20
- 최저연금월액 : 편부모아동 1인당 월 €195.30(65%이상 정도의 장애인이면서 18세 미만인 경우 월 €384.40) 완전 고아인 경우 €195.30에 €484.20을 합한 금액을 지급. 수급가능 고아가 2명 이상인 경우 €484.20을 균등배분
- 지급횟수 : 연 14회
- 배우자 및 고아연금을 합한 최대금액은 노령, 장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가입자 기준 소득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. 초과 시 배우자 유족연금을 전액 지급하고, 고아연금액이 그에 따라 줄어듦

• 기타 수급권자의 유족연금

-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유족이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권이 있는 노령, 장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가입자 기준소득의 20%를 받을 수 있음; 유족

배우자나 수급권이 있는 유족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 연금까지 증액 가능
- 사망자가 사망 당시 근로중이었던 경우, 월 기준소득은 사망 전 15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24개월의 소득을 28로 나눈 금액
- 급여계산을 위한 최저 월소득 : €858.60
- 급여계산을 위한 최고 월소득 : €3,751.20
- 최저연금액 : 수급자 1인당 월 €195.30, 유족배우자나 고아가 없고 수급자가 65세 이상 1인이면 €472.10(65세 미만일 경우 €444.90), 수급자격 있는 배우자 또는 고아가 없고 수급자가 2명 이상일 경우 €299 증액을 균등배분
- 소득조사 : 최저연금 수급자의 최고 연간소득은 €7,133.97를 초과할 수 없음
- 유족연금 지급총액은 가입자 기준 소득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.
- 지급횟수 : 연 14회
- 연금액 조정 : 소득 및 사회보장비용을 포함한 재평가 지수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됨. 연 최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의 0.25% 증가; 연 최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의 0.5% 증가됨

• 장제비 : €46.50를 일시금으로 지급

7. 관리운영기관

○ 고용·사회부(Ministry of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)
• www.empleo.gob.es
• 전반적 감독

○ 사회보장일반금고(General Treasury of Social Security)
• www.seg-social.es
• 사회보장제도의 재원관리, 사용자 및 가입자 등록, 보험료 징수

○ 국가사회보장청(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ecurity)
• www.seg-social.es
• 노동사회부 감독하의 독립된 법적 단체로 현금급여 지급

○ 노령,사회서비스청(Institute of Elderly and Social Services)
• www.seg-social.es/imserso
•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비기여 급여 및 현물 보충급여 제도운영

<2018년 ISSA 자료>